

# 宣祖 年間の 「實錄印出廳題名記」에 관한 研究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Directory of Printing Office for Sillok*

裴賢淑 (Pae, Hyon-Suk)\*

## ◁ 목 차 ▷

- |                 |                   |
|-----------------|-------------------|
| 1. 緒言           | 4. 「實錄印出廳題名記」의 意義 |
| 2. 朝鮮時代의 人名錄    | 5. 結言             |
| 3. 宣祖 年間 實錄의 複印 | <참고문헌>            |

## < 초 록 >

조선시대에는 실록을 편찬할 때마다 이 실록을 준추관사고에 봉안하고 이어 세초한 후 세초연과 정부연을 열어 실록찬수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또한 실록편찬에 참여한 관원의 명단을 작성하고 여기에 수록된 관원들에게는 차등있게 상을 내려주었다. 이 명단이 실록 말미에 수록된 경우도 있고, 별도 단행본으로 「實錄廳題名記」를 간행한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實錄廳題名記」 편찬의 유래와 내용을 밝히고자 먼저 「實錄印出廳題名記」를 분석하였다. 결과로 「實錄印出廳題名記」는 전래하는 가장 오래된 실록청제명기임이 밝혀졌고, 아울러 조선초부터 제명기를 편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實錄廳題名記」라 명명하지 않고, 「實錄印出廳題名記」라 명명한 것은 복인한 실록이므로 편찬 과정이 생략되고 인출과 그 후의 작업만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 제명기는 아주 간략한 형태이지만 이를 계승한 이후의 제명기는 보다 자세하게 수록된다.

要語: 「실록청제명기」, 「실록인출청제명기」, 인명록

\* 계명문화대학 서지학전공 교수(hspae1977@empal.com)

접수일: 2010년 8월 13일 최초심사일: 2010년 9월 17일 심사완료일: 2010년 9월 25일

<ABSTRACT>

In the Joseon dynasty, after editing and printing the Chronological Annals(실록), the Bureau of State Records(춘추관) enshrined these Annals at the Library in the palace and other 4 libraries on the steep mountains, and then washed the manuscripts of the Annals. The officials who edited the Annals were entertained twice for the appreciation of their work: firstly bestowed by the king and secondly after washing the manuscripts. They edited *The Directory of the Compilation Office for Sillok* (실록청제명기) in the Bureau of State Records. The officials recorded on *The Directory of the Compilation Office for Sillok* were endowed prizes. The same directory was either recorded at the end of the Annals or published as a monograph with the title of *The Directory of the Compilation Office for Sillok* (실록청제명기).

This paper was intended to study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editing *The Directory of the Compilation Office for Sillok* and its contents. For the first step *The Directory of the Printing Office for Sillok* (실록인출청제명기) published in the reign of King Seonjo was analyzed. It is proved that *The Directory of the Printing Office for Sillok* must be the oldest extant book among the directories of the Compilation Office for Sillok, and those directories began to be published since the early Joseon dynasty. This particular directory was titled *The Directory of the Printing Office for Sillok*, because the officials participated only in printing, but not in editing. It simply included their full official titles and full personal names. As time passed, the contents were added such as the adult name, year of birth, year of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 ancestral home, hours of duty and the business under his charge.

Key words: directory, *The directory of the Compilation Office for Sillok*,  
The directory of the Printing Office for Sillok

## 1. 緒 言

역사적인 사실을 연구할 때 관련된 역사상의 인물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적어도 인물의 성명, 본관, 가족, 출신, 저술, 사상 및 일생의 중요한 활동과 사적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와는 달리 인명에 있어서도 복잡한 경우도 있고, 기록이 산실된 경우도 있어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姓에도 單姓도 있고, 複姓도 있으며, 이름도 본명 외에 자와 호가 있으며, 호에도 別號, 尊號, 諡號, 廟號가 있다. 자와 호는 室名과 齋名에서 취한 것도 있고, 또 본관이나 관직에서 취한 것도 있다. 근래에는 필명도 등장하였고, 종교인에게는 법명 또는 세례명이 있고, 연예인에게는 예명도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인명사전 또는 인명록이다.

조선시대에도 여러 종류의 인명사전과 인명록이 편찬되었다. 따라서 이들 자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사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연구의 관점이 집중될 수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명록 연구의 하나로 실록칭의 제명기를 대상으로 고구하고자 한다.

실록을 편찬하고 간행할 때 매우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다. 각급의 문신은 물론 선공감 감역, 창준, 각자장, 균자장, 지장, 인출장, 장책장, 서기, 사령, 수직군관 등등 동원된 인원은 매우 많다. 이들에 대해 「實錄廳儀軌」에서 동원된 시일, 기간, 체직 등에 관한 전체적인 규모는 찾을 수 있다. 다만 실록편찬의 중심인물인 실록칭의 관원이 수록된 것은 「實錄廳題名記」이다.

그러나 모든 실록의 「實錄廳儀軌」와 「實錄廳題名記」가 전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자료는 왕에 따라 명칭이 약간 다르지만 주로 규장각과 장서각에 수장되어 있다. 그러나 몇 종의 「實錄廳題名記」와 「實錄廳儀軌」는 발견할 수 없었다. 자료를 탐색하던 중 선조 연간 실록을 복인할 때의 제명기인 「實錄印出廳題名記」는 최근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성암고서박물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전래하는 가장 오래된 제명기여서 실록칭 제명기의 의문을 풀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먼저 「實錄印出廳題名記」에 대해 연구하였다.

## 2. 朝鮮時代의 人名錄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명록이 편찬되었다. 錄券이나 榜目과 같이 일시에 편찬된 인명록, 先生案과 같이 누대에 걸쳐 수록된 인명록도 있고, 임무수행을 위해 동원된 사람을 보고한 명단도 있고, 時到記와 같은 일종의 방명록도 있으며, 入院錄과 같은 성균관이나 향교의 생도록도 있으며, 한 가문의 사람을 모두 수록한 족보, 한 집안의 식구만 수록한 호적이나 호구단자도 있다. 또한 독립된 책으로 편찬된 인명록도 있고, 邑誌나 儀軌 등의 서적에 삽입된 인명록도 있다. 이 가운데 중요한 인명록에 대해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공신의 명단이 수록된 것은 錄券이다. 錄券은 功臣都監이 공신을 책봉하고, 이들의 공훈을 기록하여 공신 受封者에게 발급한 文券이다. 조선은 태조 원년(1392) 開國功臣으로부터 영조 4년(1728) 奮武功臣까지 28차례 시상하였는데, 이 가운데 명종 1년(1546)의 保翼(=衛社), 광해군 5년(1613)의 衛聖, 翼社, 定運, 亨難功臣과 경종 3년(1723)의 扶社功臣은 후에 삭훈되었다. 전래하는 최고본은 태조 원년(1392) 李和에게 지급된 개국공신녹권이다. 조선 역대 공신을 망라해서 수록한 것이 忠勳府에서 편찬한 「國朝功臣錄」이다.

공신책봉의 과정은 실록과 의궤에 여러 군데 서술되어 있다. 의궤에는 공신을 책봉하게 된 간략한 전말, 주관 관서인 공신도감의 설치, 책훈의 과정을 기록한 절목, 포상 절차, 상작의 의정, 녹권의 작성과 頒賜, 예문관에서 功臣號와 功臣敎書를 마련하는 일, 공신을 책봉하고 부대적인 행사로서 예조에서 집행하는 功臣會盟祭와 功臣宴, 頒軸禮, 參祭新舊功臣과 執事官 및 백관이 殿庭에서 왕의 향연을 받는 賜醞事 등 일련의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조선 초기에는 공신의 증명으로 開國, 定社, 佐命 3공신의 正功臣에 한하여 교서와 녹권을 아울러 賜給하고, 原從功臣에게는 녹권만을 사급하였다. 그리고 靖難功臣 이후는 정공신에게는 교서만 주고,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을 주었다. 敎書는 왕이 직접 내리는 문서이고, 녹권은 왕명을 받들어 功臣都監에서 발급하는 문서이다.<sup>1)</sup>

공신교서나 녹권에는 대개 공신을 1-3등으로 나누고 공신의 직함과 성명을 수록하였고, 이어 공신으로 정하게 된 경위와 주어질 특권을 명시하였다. 교서에 수록된 공신수는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녹권에는 훨씬 많은 공신이 수록된다. 녹권은 공신으로 임명하는 문서이지만, 동시에 공신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수백인에서 많을 때에는 수천인이 연이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일종의 인명록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원종공신 녹권은 활자로 인출해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상례였다.

과거 합격자의 명단이 수록된 것은 榜目이다. 조선시대에 관리를 선발하던 방법은 크게 他薦에 의한 방법과 自薦에 의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타천에 의한 관리선발 방법에는 蔭敍와 薦擧가 있었다. 음서는 신분이나 가문을 보고 관리를 등용하는 방법이고, 천거는 개인의 학문적, 정치적 능력이나 덕행을 기준으로 등용하는 것이다. 自薦에 의한 방법은 科擧와 取才가 있었다. 과거는 시험으로 응시자의 학식이나 문장을 평가하여 고위관리를 등용한 제도였고, 取才는 하급 관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제도였다. 취재에는 守令, 外敎官, 驛丞, 渡丞, 書題, 蔭子弟, 錄事, 道流, 書吏를 선발하는 吏曹取才와 醫學, 漢學, 蒙學, 倭學, 女眞學, 天文學, 地理學, 命課學, 律學, 算學을 전공한 技術官 및 畫員, 樂生, 樂工을 선발하는 禮曹取才가 있었다.

고위관리 선발에 있어 고대에는 음서가 우세하였으나 점차 科擧가 우세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과거에는 小科(司馬試=生員試, 進士試), 文科, 武科, 雜科 네 종류가 있었고, 또한 3년에 한 번 열리는 式年試인 定期試와 增廣試, 別試, 謁聖試, 庭試, 春塘臺試 등 不定期試의 구분이 있었다. 과거라 함은 대개 문과와 무과를 의미하였다. 小科, 文科와 武科는 과거가 끝나면 藝文館에서 급제자를 알리기 위해 榜을 붙였고 급제자를 수록한 명부인 榜目を 간행하였다. 소과는 司馬榜目, 문과는 文科榜目, 무과는 武科[龍虎]榜目이라 하였다. 어느 한 시험의 급제자만을 수록한 명부인 單科榜目に 기재되는 사항은 합격 순위에 따라 응시

1) 奉成奇, “奮武原從功臣錄券과 揚武原從功臣錄券에 대한 고찰,” 『도서관』 57권 2호(2002. 여름), 114-147.

당시의 직위 또는 신분, 姓名, 字, 生年干支, 本貫, 居住地, 父親官職과 이름, 父母 및 祖父母 生存與否, 兄弟의 이름이다. 권말에는 방목 편찬을 관장한 관원과 서리의 명단이 수록되었다.

單科榜目を 종합한 것이 國朝榜目인데, 國朝文科榜目, 登科錄 등으로도 불린다. 이는 조선시대에 실시된 최초의 문과 시험인 태조 1년(1392)의 시험부터 편찬 당시까지의 급제자를 수록한 綜合榜目이다. 『國朝榜目』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영조 후반기부터이다. 현존하는 『國朝榜目』 중에는 계속 추록해 고려 충렬왕에서 19세기초까지 수록된 것도 있으며, 19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이 편찬된 것도 있다. 『國朝榜目』에는 각종 과거의 급제자를 연대순, 시험종별 그리고 성적순으로 수록하였고, 급제자마다의 기록내용은 單科榜目과 같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士族의 血緣, 地緣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지배계층의 성격, 신분구조의 변화, 향촌사회의 동향 등도 이해할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명문세가에서 가문을 현창하고 후손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原刊의 방목이 산실되거나 더 많은 복본이 필요한 경우 조상이 합격한 연대의 방목을 단독으로 또는 同榜者의 후손과 연계하여 복간한 경우도 있다. 이때는 대개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잡과는 기술관을 등용하던 과거였다. 잡과에는 譯科[漢學, 蒙學, 倭學, 女眞學], 醫科, 律科와 陰陽科[天文學, 地理學, 命課學]의 네 종류가 있었다. 문과나 무과에 비해 격이 낮고, 대과와 소과의 구별이 없는 단일과로서 초시와 복시만 있고 전시는 없었다. 필요한 인원도 적어서 식년시와 증광시만 설행되었다. 초시는 식년 전해 가을 해당관청의 주관으로 실시하였고, 복시는 식년 봄 해당관청의 提調와 禮曹堂上의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시험 과목은 전공서적과 경서 및 『經國大典』을 필수과목으로 하였다. 합격자에게는 성적에 따라 종7품 내지 종9품의 품계를 주어 해당관청의 임시직인 權知로 임명하였다. 전래되고 있는 잡과방목은 대개 필사본이다. 잡과 합격자의 명단을 망라한 것이 『醫譯籌八世譜』이다. 이들 잡과방목은 전문직 종사자와 그 임용제도와 당시 급제자에 대한 연구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특정관청의 역대관원의 명단을 수록한 것은 先生案인데, 일명 案冊, 官蹟, 官案, 宦蹟으로도 불렸다. 題名記나 座目과 비슷한 성질로서 대개 필사본이다.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등재 인물이 현임자의 전임자라는 데서 선생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고대에는 선생은 문장과 도덕에 뛰어난 선비를 칭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는 동시대인보다 선각자이면서 특정 관직을 역임한 관원을 칭하게 되었고, 大官, 小官, 內官, 外官을 막론하고 선생안을 작성하였다. 수록 내용은 직종이나 자료마다 편차가 크지만, 前任官員의 姓名, 品階, 生年, 本貫, 赴任時期, 離任時期, 離任事由, 前職官職, 居住地, 治績 등이 간략하게 기록되고, 기타 관련 제도의 변동 사실 등이 기록되었다.<sup>2)</sup>

선생안은 특정 시점에서 이전까지의 자료를 정리하여 처음 만들었고, 이후에는 내용이 추록된다. 추록은 일차적으로 책의 편찬 때 제시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책의 편찬은 자료 정리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전래되는 고려시대 중앙관직의 선생안은 全無하고, 지방의 경우도 단독 자료로서 경상도의 「慶尙道營主題名記」, 慶州의 「東都歷世諸子記」와 「慶州司首戶長行案」, 羅州의 「錦城日記」 등에 고려후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작성된 각종 읍지 가운데 고려시대까지 포괄된 경우도 있는데 安東과 永川의 선생안이 여기에 속한다.<sup>3)</sup>

조선시대에는 많은 선생안이 작성되었다. 중앙관서를 단위로 한 선생안에는 「三公先生案」, 「參判先生案」, 「參議先生案」, 「堂上先生案」, 「銀臺先生案」, 「霜臺先生案」, 「備邊司先生案」, 「玉堂先生案」, 「大司憲先生案」, 「文任先生案」, 「副提學先生案」, 「銓郎先生案」, 「承旨先生案」, 「堂後先生案」, 「議政府郎廳先生案」과 같은 선생안이 있다.

중앙 관서의 선생안은 조선시대 중앙관제와 관원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선생안의 내용은 해당 관직의 운영실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관련 제도사 연구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 수록된 내용이 장기간에 걸친 것이

2) 具玩會, “先生案을 통해본 朝鮮後期の 守令,” 『慶北史學』 제4집(1982), 192.

3) 尹京鎮, “고려후기 先生案 자료를 통해본 外官制의 변화,” 『國史館論叢』 101(2003. 12), 1-2.

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제도가 바뀐 경우도 있는데, 이도 선생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지방 관서에는 각도의 감사와 수령을 대상으로 한 선생안이 있었다. 경상도의 「道先生案」, 전라도의 「湖南觀察使先生案」, 「湖南道先生案」과 같은 도관찰사를 대상으로 한 선생안도 있고, 「梁山郡先生案」, 「羅州先生案」, 「慶州邑先生案」, 「安東先生案」과 같은 각읍의 수령을 대상으로 한 「邑先生案」도 있다. 「道先生案」과 같이 단행본도 간혹 있지만 읍지에 수록된 것도 적지 않다. 읍호에 따라서 郡先生案, 府使先生案, 留守先生案, 牧先生案, 兵營先生案, 道節制使案, 節制使案, 都巡問察理使案, 邊地僉使案, 縣令題名記, 縣監先生題名記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邑先生案」에는 수령의 출신에 대해 문과, 무과, 陰仕로 구분해서 기록한 것도 있다.<sup>4)</sup>

鄉廳 향리의 수반을 대상으로 한 것에는 慶州府의 「戶長先生案」과 강화부에 역을 지고 있던 서리를 대상으로 한 「江華府時役書吏成冊」이 전래되고 있다. 이외에 「慶尙左水營先生案」과 같은 지방의 군사시설의 선생안도 전래되고 있다. 지방 관리의 명단은 단행본보다는 읍지에 수록되어 전하는 것이 더욱 많은 편이다. 지방의 선생안은 지방 제도와 지방 행정 체계 및 향리가문간의 세력변동과 향리직 운영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사회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각 지방의 중요 인물과 지방사 연구의 중요자료가 된다.<sup>5)</sup>

임무수행을 위해 동원해서 보고용으로 작성한 인명록도 여러 종류 전래되고 있다. 도내 각읍의 향교와 서원의 생도 가운데 落講했거나 강에 응하지 못한 생도를 기록하여 교원생의 양태를 알 수 있게 한 「江原道各邑校院生落講及雜頰區別成冊」, 울릉도에 새로 입주한 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적 사항과 이주 후 할당된 개간지의 두락수를 거주지별로 기록한 「江原道鬱陵島新入民戶人口姓名年歲及田土起墾數成冊」이 있다. 또한 수감하고 있던 죄수의 수감시작 연월일, 拷訊 회수를 적어 비변사에 보고한 「慶尙道去冬三朔時囚罪人等始囚年月日及同推

4) 具玩會, “先生案을 통해본 朝鮮後期の 守令,” 『慶北史學』 제4집(1982), 194.

5) 許興植, “安東先生案,” 『大丘史學』 제19집(1981), 220.

拷訊次數開錄成冊」, 도내 각읍의 老人職을 받을 만한 고령자의 役, 성명, 연령 등을 적어 의정부에 보고한 「慶尙道內各邑應資老人職役姓名年歲開錄成冊」, 도착한 표류민의 거주지별, 개인별로 役, 성명, 연령을 기록한 명부인 「慶尙道東萊府來漂民等役姓名年歲居住成冊」, 성주목에 새로 지은 公廩와 보수한 公廩의 間數, 감독인의 성명을 기록한 「慶尙道星州牧公廩新建修補間數及監董人姓名成冊」이 있다.

또한 비변사에 보고한 도내 補賑納粟者의 거주, 신분, 성명과 각각 납부한 전곡의 숫자를 기록한 「公忠道各邑補賑人等居住職役姓名及所納錢穀數成冊」, 체포된 천주교도와 그들을 잡은 포교를 함께 적은 「公忠道各鎮各邑內所捉邪學罪人居住姓名及讖校姓名并錄成冊」이 있다. 濟州牧에서 朔膳으로 진상한 물품의 馱數와 호송한 사람들의 성명을 적은 「本州所封二月令朔膳進上馱數領護人姓名成冊」, 전라도 각지에서 체포한 동학도의 성명, 수효, 처리사항, 노획품의 수량, 노획자를 중앙에 보고하기 위해 기록한 「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及將領姓名并錄成冊」, 도내 각읍에 있는 鎭堡와 烽臺별로 관리하는 장졸수를 기록한 「咸鏡道各邑鎭堡烽臺及將卒并錄成冊」, 도내 功令生의 역, 성명, 연령, 본관, 거주지와 四祖를 기록한 「咸鏡道內功令生錄名成冊」, 鍾城郡의 對岸인 古間島에 들어가 토지를 경작한 사람들의 성명과 그 경작전의 結負數를 기록한 「咸鏡北道鍾城郡對岸古間島田今春入種民名成冊」 등 다양한 보고용 인명록도 전래되고 있다. 이들 자료는 대개 보고서에 명단이 포함된 것이다. 이들 자료는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연구의 일차자료가 많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일반 선생안과는 구분되지만 鄕校와 書院에도 각종 任員錄, 題名錄, 座目 등이 작성되어 있었다. 서원의 원장 등 각 직책을 맡았던 院任들의 인사기록인 「院任題名錄」, 「經任案」, 「色掌曾經錄」, 「有司錄」, 「院長先生案」, 수학한 유생들의 명단인 「入院錄」, 「靑衿錄」, 「敎生案」, 서원을 방문한 인사들의 방명록인 「尋院錄」이나 「時到記」도 여러 서원에 전래되고 있다.

이외 실록을 수호한 사찰의 주지스님의 명단을 수록한 인명록도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實錄을 봉안할 사고를 험준한 심산에 건립한 후 이를 관리할 참봉을

임명하고, 승군도 사고마다 40명을 정원으로 하여 2교대로 수호하게 하였다. 승군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 總攝을 임명하고 수직을 통솔하게 하였고, 외방사고 가운데 정족산사고의 수호사찰인 傳燈寺의 최고책임자가 都摠攝으로 임명되었다. 이 도총섭의 명단과 재임기간이 수록된 『都摠攝案冊』이 전래되고 있다. 기록에는 현종 8년(1667) 이후부터 기록되었다고 하나 숙종 45년(1719) 이후의 도총섭 명단만 전래된다.<sup>6)</sup> 『都摠攝案冊』을 통해 당시 사찰의 기능과 사고 관리의 실태를 살필 수 있다.

한 가문의 사람을 모두 수록한 족보도 있다. 家系の 영속과 씨족의 유대를 존중하던 조선 사회에서는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다. 족보는 같은 씨족의 시조로부터 족보 편찬 당시 자손까지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다. 씨족이란 姓과 本貫이 같아서 同祖意識이 있는 男系親族을 가리킨다. 족보는 조상을 숭배하고, 가계를 계승하며, 씨족을 단결하는 동족결합의 물질 표현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의 필사된 계보는 이미 고려 이래로 귀족집안에 작성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동족 또는 한 분파 전체를 포함하는 족보는 세종 5년(1423)에 간행된 文化柳氏의 永樂譜가 최초의 족보로 알려져 있다. 현존 최고의 족보는 성종 7년(1476)에 간행된 『安東權氏世譜』와 文化柳氏의 두 번째 족보인 명종 17년(1562) 간행된 嘉靖譜로 알려져 있다.<sup>7)</sup> 이 밖에 조선 초기에 간행된 족보는 南陽洪氏, 全義李氏, 驪興閔氏, 昌寧成氏 등의 족보이다. 이후 수많은 가문의 족보가 간행되었다. 족보에는 始祖부터 시작하여 世代順으로 縱系를 이루고, 그 지면이 끝나면 다음 면으로 옮겨간다. 이때 면마다 표시를 하여 대조에 편리하게 하였다. 각각의 사람에 대하여는 그 名, 자호, 시호, 生卒年月日, 관직, 封號, 科榜, 勳業, 덕행, 충효, 旌表, 분묘의 소재지, 문장, 저술 등 일체의 신분관계가 기록되었다. 자녀에 관해서는 男女를 엄격히 구분했고, 특히 後繼의 유무, 出系 또는 入養, 嫡庶 등을 명백히 기록하였다.

족보에서 역시 중시되는 것은 왕실의 족보인 『璿源錄』이나 『璿源系譜紀略』이

6) 『傳燈本末寺誌』 影印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8), 45-59.

7)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K&i=235800&v=42>>, [2010. 8. 31. 17. 52].

었다. 왕실은 하나의 가문이라는 사적인 성격과 국가를 대표하는 공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璿源錄』은 다른 가문의 족보와는 달리 국가적 사업으로 편찬되었다. 『璿源錄』의 편찬 사업은 조선 초기부터 이미 이루어졌으나, 『璿源系譜紀略』에 이르러 체제가 갖추어졌다. 『璿源系譜紀略』은 숙종 5년(1679)에서 1932년까지 약 253년 동안에 114회 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간행된 사정은 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sup>8)</sup> 수록된 대상은 姓孫이나 外孫 모두 5대로 제한되었다.

『璿源系譜紀略』을 보충할 자료로 『宗親加現錄』, 『璿源加現錄』, 『璿源類附錄』도 편찬되었다. 『宗親加現錄』은 朝鮮王家의 本孫, 『璿源類附錄』은 外孫 가운데 파악되지 않았던 후손을 찾아내어 수록한 족보이다. 『璿源加現錄』은 內外子孫 가운데 파악되지 않았던 후손을 찾아내어 그 해당 후손만을 각 王子·大君·駙馬별로 수록한 족보이다. 이들 자료는 모두 宗簿寺에서 삼년마다 식년을 정해 추록하였다.

이외 한 집안의 식구만 수록한 戶籍이나 戶口單수도 있다. 이를 지방행정단위로 성책한 것이 帳籍이다. 帳籍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로 戶籍簿이다. 가장 오래된 것은 新羅帳籍인데, 1950년대 일본 正倉院 수장의 유물을 정리하다가 『華嚴經論』의 帙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는 신라의 민정문서로서 景德王 시대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신라 농촌사회의 구조와 토지제도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전래되는 주요 장적은 『漢城府北部帳籍』, 『慶尙山陰縣帳籍』, 『大丘府帳籍』, 『尙州牧帳籍』, 『蔚山戶籍』으로 그 일부가 전래되고 있다. 이들 장적은 중앙정부의 부세, 요역의 징수 및 국민통제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한 것이다. 면별로 호적작성작업에 참여한 風憲, 約正, 別有司 등과 호구수를 정리한 것이다. 호적은 식년 子卯午酉마다 작성하는데, 지방 각읍면의 사대부를 감관으로 임명

8) 尹仁鉉, “凡例와 跋文을 통한 璿源系譜記略의 板本 選別考,” 『書誌學研究』 23집(2002. 6), 211.

하여 그 관리하에 각호의 호구단자를 2부 작성하여 里任과 面任이 모아서 州郡에 보냈다. 주군에서는 그 호구단자를 同戶籍과 비교한 후 1부는 成給戶籍으로 戶主에게 돌려주어 보관하게 하고, 1부는 호적작성의 자료로 삼았다. 주군에서는 호적을 3부 만들어, 1부는 주군, 1부는 감영에 보관하고, 1부는 호조에 보냈다.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인명록이 편찬되어 전래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임진왜란 이후 실록을 복인하면서 작성한 실록청 관원의 명단인 『實錄印出廳題名記』이다. 『實錄印出廳題名記』를 살펴보기 이전에 선조 연간 실록을 복인한 사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 3. 宣祖 年間 實錄의 複印<sup>9)</sup>

선조 25년(1592) 4월부터 왜군이 20만 대군으로 부산포에 상륙하여 조선을 유린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서 星州史庫가 먼저 黑田長政의 군대에 희생되었고, 小西行長과 黑田長政의 군대가 북상하면서 忠州史庫도 소실되었다. 4월말 임금의 수레가 의주를 향해 도성을 떠난 후 少西行長에 이어 들어온 加藤清正의 군대가 경복궁, 창덕궁과 창경궁도 일시에 방화하였으므로 春秋館史庫에 수장되었던 실록, 사초와 『承政院日記』 등이 불탔고 文武樓와 弘文館에 수장되었던 서적도 함께 소실되었다.<sup>10)</sup>

이 와중에 全州史庫의 실록만은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즉 小早川隆景의 군대가 전주를 공략하려고 하자 高敬命의 의병이 대적하여 지체시켰고, 이 사이 全羅監司 李洸, 全州府尹 李廷馥, 경기전 참봉 吳希吉과 柳訥 등이 실록을 소개시킬 수 있었다. 이때 실록소개에 중임을 참봉 오희길에게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泰仁의 선비인 孫弘祿, 安義, 義僧 熙默이 조력하였다. 이들은 6월 22일 정읍 내장산의 隱峰庵으로 소개시켰고, 7월 14일에는 다시 내장산의 飛來庵으로 소개시켰으

9) 3장의 내용은 裴賢淑, 『朝鮮實錄研究序說』(대구: 태일사, 2002)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10) 宣祖修正實錄. 25年 4월 晦日. 권26.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5. 614上右.

므로 재난을 피할 수 있었다.<sup>11)</sup>

내장산으로 이봉한 일년 후 선조가 江西에 머물고 있을 때에 전주부윤 李廷馥이 의외의 변을 우려하여 실록을 行在 근처로 이안할 것을 청하였다.<sup>12)</sup> 곧 사관과 선전관이 파견되어 井畚 내장산에서 安義, 孫弘祿과 함께 태조의 영정과 실록을 육로를 통해 牙山으로 옮겼고, 다시 해로로 海州까지 실어 왔다. 이때가 선조 26년(1593) 7월이었다. 당시 해주는 조석으로 경급하지는 않았으나 의외의 변이 있어 긴급할 때를 대비하여 더욱 안전한 곳에 둘 필요가 있었다. 이에 寧邊으로의 移置를 고려하였으나, 곧바로 실행되지 못해 실록은 여전히 海州에 임시로 안치되어 있었다. 만 일년 후인 선조 27년(1594) 7월에 실현되어 寧邊 妙香山에 두고 믿을 만한 스님에게 승직을 주어 굳게 지키게 할 것을 결정하였다.<sup>13)</sup>

왜군이 남으로 패퇴하자 임금은 26년(1593) 8월 중순 江西를 떠나 海州에 머무르다가, 10월에 환도하여 貞陵洞(현재의 貞洞)에 있는 옛 月山大君의 사저를 행궁으로 삼았고<sup>14)</sup> 실록은 그대로 해수에 두었다. 이듬해 선조 27년(1594) 8월 해주에서 포쇄하여 그 形止案이 전래되고 있다.<sup>15)</sup> 이때 왜군은 의병 및 승군의 봉기, 명군의 진주, 보급의 곤란, 전염병 등으로 전의를 잃고 전군을 남하시켜 화의의 진행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임진왜란이 발생한 후 1년 6개월만에 환도한 후 정비해나가는 과정에 한 부만 남게 된 실록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어 복본제작에 대한 논의가 몇 차례 있었다.

그 첫 번째 제의는 선조 27년(1594) 9월이었다. 이때 조정은 해주산성 내에 실록을 봉안할 사각의 건립을 황해감영에 지시하였다. 이에 黃海監司 李廷立이 반드시 絶險하여 인적이 닿지 않는 곳에 산성을 쌓고 史閣을 건립해야 후환이 없을 것이라고 장계로 알려왔다. 備邊司에서는 이 무사한 때에 兼春秋를 동원하여 小冊子로 몇 건을 謄寫해서 각처에 분장하면 의외의 환난을 모면할 수 있을

11) 『史庫址調查報告書』(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201-209. 壬辰記事.

12) 宣祖實錄. 26年 7월 辛酉. 권40.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2. 30 上左.

13) 宣祖實錄. 27年 7월 丙申. 권53.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2. 317 上左.

14) 宣祖實錄. 26年 10월 辛巳. 권43.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2. 105 上右.

15) 萬曆二十二年甲午八月十六日黃海道海州史庫曝曬形止案. 寫本. [宣祖 27(1594)].

것이라고 주청하였다. 그러나 선조는 實錄을 가벼이 등사한다는 자체가 미안할 뿐 아니라 불가한 점이 있으니, 잠시 후일을 기다려야 하니 다만 주밀하게 간직할 것을 명했다.<sup>16)</sup> 이는 임진왜란의 재난을 면한 전주사고본 실록의 복본을 제작하려는 최초의 시도를 보여주는 기록인데 후일을 기다리자고 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두 번째 제의는 선조 28년(1595) 9월에 春秋館에서 제의한 것이다. 당시 實錄은 여전히 海州에 임시로 안치되어 있었는데, 여염의 집과 연결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이 있었다. 이에 춘추관에서 관청의 東樓는 매우 튼튼하므로 연달아 늘어선 집들을 철거한 후 수리하여 실록을 옮겨 봉안하면 편리하고 마땅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해주에 명하여 출기 전에 급속히 修治하게 하여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린 뒤에 별도로 춘추관 관원을 보내어 奉審하고 날을 가려 이봉할 것을 건의하였다.<sup>17)</sup> 아울러 실록부분을 등서하는 것은 긴급한 일이니 늦출 수 없지만, 매우 중대하고 또한 며칠 동안의 작업으로 용이하게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봄철 해가 길어질 때를 기다려 춘추관 관원을 많이 보내어 일시에 날짜를 계산하여 등서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품의하였다.”<sup>18)</sup> 그러나 이때도 시행되지 못하였다.

세 번째로 선조 28년(1595) 11월경에 실록을 해주에서 강화로 이안한 직후 12월에 黃是가 제의하였다. 黃是는 선왕의 實錄을 江華 한 곳에만 간직하고 있어 불안하니 다시 두어 벌을 필사하여 각처에 간직할 것을 제안하였다.<sup>19)</sup>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보이지 않는다. 이후 강화에 실록을 두는 것은 미안하다고 하여 香山으로 옮길 것을 논의하면서, 史官을 시켜 守直하거나 別官을 보낼 것을 논의하였다. 이에 金睟는 실록을 먼저 향산으로 옮기면 인심이 동요될 것이니, 사태를 관망하여 海島에 보관해야 한다<sup>20)</sup>고 하였다. 이런 반대가 있어서인지 즉각으로

16) 宣祖實錄. 27年 9월 庚辰. 권55.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2. 341上左.

17) 宣祖實錄. 28年 9월 戊寅. 권67.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2. 552下左.

18) 宣祖實錄. 28年 9월 戊寅. 권67.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2. 552下左.

19) 宣祖實錄. 28年 12월 丙寅. 권70.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2. 618.

20) 宣祖實錄. 29年 11월 己亥. 권82.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3. 99下左.

실록은 이안되지 않았으며, 실록의 이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

네 번째 제의는 선조 30년(1597) 2월에 李惟弘이 실록을 등서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李惟弘은 역사 기록은 時政에 관계될 뿐 아니라 또한 후세에 전하는 것인데, 江華는 외딴 섬으로서 혹시 失陷되면 한 곳에 비치된 역사가 전부 散佚되어 治亂의 자취를 상고할 수 없고, 후세에 신빙성 있는 典籍을 남겨 줄 수 없으므로 급히 문신을 보내 謄書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史官에게 출납하게 해서 원래 수장된 실록 외에 두 짝을 더 謄寫하여 한 짝은 金剛山에, 한 짝은 妙香山에 비치하여, 수재나 화재 또는 도적에 대비케 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선조는 반드시 시급히 해야 할 것이나, 다만 쉽사리 이루지 못할까 두렵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領事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결정하기로 하였다.<sup>21)</sup>

이로서 실록의 등서준비는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實錄을 등서하는 일을 兼春秋 10명으로 하라고 비답을 내렸으나, 관원이 많으면 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선 절반인 5명만으로 부지런히 등서하게 하고 천천히 실정을 살피면서 적절하게 증원할 것을 정하였다.<sup>22)</sup> 이와 같이 실록필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으나 정유재란(1597)으로 중단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임진왜란 후 최초에는 인출보다는 필사할 것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조 30년(1597) 왜구가 재침략을 시도하여 2월에 加藤清正과 小西行長이 상륙하고, 이어 본대가 와서 6월에는 좌군은 전라도에서 북상하고 우군은 稷山과 竹山에서 진격해오고 있었다. 이 전쟁의 와중에 실록상실의 위기감이 고조되어 복본 제작을 또다시 건의하게 되니 다섯 번째 제의이다. 선조 30년(1597) 7월 사간원에서 실록을 등서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사간원에서는 병화가 일어난 뒤에 1건만 남은 선왕의 實錄을 강화부에 봉안하고서 등서하려 할 때에 비변사의 계사로 인하여 정지된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비용 때문에 후일에 끝없는 후회를 남길 수 없으므로 급히 거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왕은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sup>23)</sup>

21) 宣祖實錄. 30年 2월 癸酉. 권85.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3. 162下左.

22) 宣祖實錄. 30年 7월 癸丑. 권90.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3. 268下左.

23) 宣祖實錄. 30年 7월 庚子. 권90.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3. 263.

8월이 지나면서는 경중과 강화도 자못 위험한 단계였으므로 강화에 임시로 안치한 실록을 9월에 영변 보현사로 이안하는 형편이었으므로 등서는 역시 실현될 수 없었다.<sup>24)</sup> 곧이어 豊臣秀吉이 사망(1598)하게 되자 정유재란도 안정기에 들었고, 춘추관에서는 또다시 필사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 묘향산사고의 실록을 포쇄한 형지안이 선조 32년(1599)과 34년(1601)도분이 전래되고 있다.

여섯 번째 논의는 선조 34년(1601) 1월 지금 봄이 점점 화창해지고 國事도 안정되었으므로 서둘러 실록등서의 계획을 세울 것을 사헌부에서 건의하였다. 즉 본관의 관원이 윤번으로 수직하고, 또 종전의 公事대로 빨리 서둘러 등서하여 영구히 보존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sup>25)</sup> 또한 時事도 조금은 안정되는데 향산에다 그대로 둔다는 것은 매우 미안한 일이고, 등서하자면 거기 그냥 두어서는 더욱 불편한 일이므로 寧邊府에 집 1채를 별도로 선정하여 그곳으로 옮겨 봉안하였다.<sup>26)</sup>

일곱 번째는 선조 34년(1601) 9월에 경연에서 참관관 金時獻이 실록을 등서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물자가 부족하다고 寧邊에 봉안해 둔 실록을 謄書하지 못하였는데, 소요되는 것은 종이와 筆墨만 있으면 되는데 이 일을 방치해 둘 수 없다고 하였다. 전에도 여러 부로 나누어 보관했기 때문에 兵亂을 당하였어도 지금까지 남아 있게 된 것이므로 빠른 시일 안에 등서하여 각도와 명산에 나누어 보존해야 된다고 건의하였지만,<sup>27)</sup> 역시 금방 실현되지는 않은 듯하다.

여덟 번째는 선조 35년(1602) 8월에 마침 정유재란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실록을 묘향산에 여전히 수장시킴은 매우 미안한 일이므로 필사하여 분장하자는 춘추관의 주청, 여론과 대간의 청에 따라 실록을 등서하기로 하였다. 전일에 啓下한 事目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兼春秋 10권을 차출하여 實錄을 봉안한 곳에 가서 등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功役이 거대해서 수년 안에 완료하기가 어려워, 만약 법을 정해서 독려하지 않으면 지체되어 날짜만 허비할까 염려되었다. 따라서 시급히 江華로 다시 옮겨 놓고 도성에 史局을 설치한 뒤 本館의 당상관이

24) 宣祖實錄. 32年 7월 乙卯. 권115.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3. 643下右.

25) 宣祖實錄. 34年 1월 戊申. 권133.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4. 178上右.

26) 宣祖實錄. 34年 1월 壬子. 권133.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4. 179上左.

27) 宣祖實錄. 34年 9월 乙巳. 권141.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4. 296.

전담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실록의 卷帙이 엄청나게 많아 일시에 완성시키기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꼭 먼저 써야 할 해당 권질을 차례로 가져다가 謄寫하기 위해 행해야 될 사목을 고쳐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청하였다. 이때 선조는 내년(1603) 봄에 중국 사신이 올 것인데 장차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 모르는 형편이므로, 史局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니 우선 중국 사신이 다녀 간 뒤에 거행하라고 명하였다.<sup>28)</sup>

아홉 번째로 선조 36년(1603) 5월에는 4건을 필사하여 각처에 분장할 것을 춘추관에서 또다시 청하였다.<sup>29)</sup> 8월에 春秋館에서 만일에 功役이 거창한 것만 염려하여 오늘 내일 미루다가 어느 날에 시작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하면서 詔使가 나온다는 소식이 아직까지 없으니, 앞서 마련한 事目에 따라 시행할 것을 건의하여 윤희를 받았다.<sup>30)</sup> 곧 이어 선조는 實錄廳의 등서에 동원되는 관원, 그 관원이 등서할 부분, 동원되는 인원수, 소요기간, 필사의 진행상황, 필사 완료의 예상시기 등 그 규모와 조치를 보고하라 명하였다.<sup>31)</sup> 여기에서 實錄廳을 언급하였으니 본격적으로 실록의 복인사업은 시작된 것이다.

이에 실록청에서는 실록의 形止案을 가져다가 고찰해 본 바, 실록은 모두 통틀어 577책이었으며 行字數가 매우 많아 글씨를 빨리 쓰는 사람이 쓰더라도 兼春秋 10員으로는 절반도 부족할 것 같아 10員을 더 증원해야 했다. 이들 20員에게 매번 일정한 분량을 책임지워 등사하게 한다면 한 달에 30권을 등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2년 동안에 겨우 1질을 등서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관들은 모두 본직이 있어 겸임한 관사의 일에 전력할 수가 없고, 게다가 除拜와 遞職이 일정하지 않으며, 중간에 개인적인 사고도 없으리란 보장도 없어 3년이 지나도 1질도 완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조종조의 실록은 모두 鑄字로 印出했다는 견해도 있어 校書館에 있는 鑄字와 新舊의 활자를 서로 보충하여 쓴다면, 5년 안에 3질의 인출을 끝내게 될 것인

28) 宣祖實錄. 35年 8월 戊申. 권153.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4. 405下左.

29) 宣祖修正實錄. 36年 5월. 권37.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5. 688下右.

30) 宣祖實錄. 36年 5월 戊午. 권162.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4. 474.

31) 宣祖實錄. 36年 5월 庚午. 권162.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4. 479上左.

바 어렵게 등서하여 2년에 겨우 1질을 만드는 것보다 5년에 3질을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보고하니 선조는 권질이 적지않은 서역을 선불리 문관이 필사하다가 성사할 수 없을 것이고, 하물며 1건에 머물지 않으니 강화에 설국하여 인출하느니만 못하므로 다시 의논하라고 명했다.<sup>32)</sup> 이에 따라 논의한 바 江華에 국을 설치하여 인출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쉬우므로 工匠들을 잘 권면하고 감독해서 서둘러 인출한다면 정해 놓은 기일 안에 공역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하였다.

다만 강화에 국을 설치한다면 서울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듯하지만 외딴 섬에 떨어져 있게 되므로 관계되는 사세가 가지가지로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감독할 堂上官 1員과 監校, 監印, 史官, 兼春秋 중에 3-4원이 내려가 항시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의 재력과 물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염려가 있었다. 이에 화재의 염려가 전혀 없는 南別宮(현 소공동 조선히otel 자리)에 있는 조용한 방에 실록을 봉안하고, 兵曹의 넓직한 곳에 인출할 국을 설치하고서 시급하게 일을 시작할 것을 건의하였다.

만일 실록 奎帙을 서울에다 옮겨 놓는 것이 군색하거나 위태로울 염려가 있다면, 지난해에 마련하여 아된 계사의 내용대로 우선 강화에다 봉안해 놓고, 권수를 헤아려서 순차적으로 가져다가 앞부분부터 인출한 다음 도로 강화에다 보관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다고 보고하여 윤허를 받았다.<sup>33)</sup> 이로서 경중에 있는 병조의 넓은 청사에 설국하여 인출하게 되었고, 이후 강화에는 영구히 사고를 설치하여 원본실록을 봉안하였다. 선조 25년(1592) 4월부터 선조 36년(1603) 5월까지 11년 동안 9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침내 복인하게 된 것이다.

선조 36년(1603) 5월에 병조의 관창에 실록인출청을 설치하고 복인에 필요한 용지와 활자들을 모두 구비하여 실록을 묘향산에서 강화로 이봉하고 순차적으로 간행에 들어간 것은 선조 36년(1603) 7월이었다.<sup>34)</sup> 강화실록을 순차적으로 경중으로 옮겨온 것은 10월에 기록된 형지안을 통해 알 수 있다.<sup>35)</sup>

32) 宣祖實錄, 36年 5월 辛未, 권162.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4. 479上左.

33) 宣祖實錄, 36年 5월 甲戌, 권162.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4. 480下左.

34) 李廷龜, 『月沙集』 影印本 (서울: 景文社, 1982) 권 39. 實錄印出廳題名錄序.

인출에 들어가자 종이의 조달이 문제가 되었다. 실록 인출용 종이의 품질을 당초에는 보통 白紙로 했다가 점차로 조금씩 좋게 하여 마침내는 아주 정결하고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였었다. 호조에서 실록 3권 인출에 필요한 종이가 지극히 많은데, 어려운 시기라는 핑계로 거행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에 최잔한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입게 하자면 종이의 품질은 백지 중에서 조금 좋은 것을 가려 쓰기로 하였다. 下三道에 각각 300권씩 우선 배정하여 貢納하는 대로 차례차례 올려 보내도록 行會하고, 인출되는 상황을 보아가며 소용될 종이의 다소를 살핀 다음에 다시 처리할 것을 운허받았다.<sup>35)</sup>

곧이어 실록 인출을 위한 활자는 校書館에 현재 보존되어 있는 鑄字 중에 乙亥字가 수효도 꽤 넉넉하고 크지도 작지도 않아 실록을 인출하는 데 적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출하는 데에 쓰는 大內에서 하사한 활자와 平壤字는 모두 선조 13년(1580) 경진에 만든 것이고 訓練都監字는 선조 8년(1575) 을해에 만든 것이므로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달라 섞어 쓸 수 없었다. 이에 공신도감에 있는 庚辰字와 乙亥字를 바꾸어 쓸 것도 건의하였다.<sup>37)</sup> 그러나 글자가 腐蝕되어 흠이 많으므로 새겨서 보충하지 않는다면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다. 글자를 새겨 보충할 黃楊木도 매우 부족한데 감자기 준비하기가 어려워 황양목이 나는 황해도와 강원도에 각각 큰 것으로 40주씩 베어 시급히 올려보낼 것을 두 감사에게 하유하였다.<sup>38)</sup>

實錄을 印出하는 일이 하루가 급한데, 工匠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아 글자를 고르게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廳中의 장인은 모두 訓練都監에서 옮겨 왔는데, 匠人 10명이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양은 20장이었다. 인출이 지지부진하여 功臣都監의 장인을 차출할 것을 청하고, 아울러 戶曹는 번번이 悤료를 줄이는 것만 능사로 삼고 장인의 괴로움은 헤아리지 않고 있어 즉시 호조로 하여금 悤료를 더 주게 하고 성과가 있도록 책임지워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는 훈련도감의

35) 萬曆三十一年癸卯十月十八日京畿道江華府史庫曝曬形止案. 寫本. [宣祖 36].

36) 宣祖實錄. 36年 5월 戊寅. 권162.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4. 482上右.

37) 宣祖實錄. 36年 7월 丁丑. 권164.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4. 503.

38) 宣祖實錄. 36年 5월 戊寅. 권162.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4. 484上右.

장인은 도감에 있을 때에는 일이 한가하고 廩料가 후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8斗의糯米만 받으면서 해가 뜰 때 일하러 나와 해가 넘어가야 과하고 돌아가므로 모두가 괴롭게 여겨 장차 도망치는 폐단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8월부터 인출에 들어가 실록을 강화에서 순차적으로 경중으로 가져와서 인출하고, 나머지는 강화에 두었다.<sup>39)</sup> 37년(1604) 4월에는 당상과 편수관 이하의 관원은 정원 외에 더 증가시키고도 부족하여 번갈아 당직하고 혹은 분담하여 교정하였다.<sup>40)</sup> 그만큼 규모가 방대한 업무였으므로 실로 많은 공력, 인력, 물력이 투입된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실록복인도 선조 39년이 되자 막바지에 이르렀다.

39년(1606) 4월이 되자 實錄印出廳에서는 이미 교정을 끝냈고 改補도 마무리되었다. 구분은 577권<sup>41)</sup>인데 비해, 신인본은 4-5권 또는 2-3권을 1책으로 묶었으므로 신인본 1권은 259책(13代 804卷)이었고, 신구본 5권을 합해 1,500책이 넘었다. 이 많은 卷秩을 한 곳에 모아 둔다는 것은 지극히 미안하여, 觀象監에 명해 봉안할 길일을 택하게 하여 외방의 경우는 실록청 당상 및 사관을 파견하여 陪奉케 하되 장마가 지기 전에 급히 서둘러 봉안토록 하고, 서울의 경우는 춘추관을 수축할 때까지는 우선 兵曹에 봉안하기로 하였다.<sup>42)</sup>

이어 實錄印出廳에서 아뢰어 세초를 허락받았다. 이때 선조는 洗草 때에 한만 하게 하여 史草가 그대로 창고 속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다시 전일의 습관을 되풀이할 수 없으므로 많은 관원이 모여 모두 태워버리는 것이 옳다고 전교하였다. 이어 먹이 짙어 쓰지 못하는 인쇄지 10여권을 가려내어 오는 5월에 실록청의 전후 당상과 낭청이 모인 자리에서 전교에 따라 불태우고 酒 1등을 하사하라는 명하였다.<sup>43)</sup> 그러나 실제로는 먹이 진하고 장이 뒤바뀐 63권 2장을 불태웠다.<sup>44)</sup>

39) 宣祖實錄. 36年 8월 丙戌. 권165.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4. 510.

40) 李廷龜, 『月沙集』 影印本(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1). 권39. 實錄引出廳題名錄序.

41) 원문에는 卷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물리적인 책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冊이어야 한다. 36년 5월의 기사에서는 577권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전래된 실록은 576책이었다. 이는 『文宗實錄』 권11이 처음 分藏할 때 실수가 있어 全州에는 奉安되지 못했으므로 複印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에 권9가 2책 수장되어 있어서 책수는 모두 577책이었다.

42) 宣祖實錄. 39年 4월 丙寅. 권198.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5. 188下左.

43) 宣祖實錄. 39年 5월 庚午, 壬申. 권199.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5.

임진왜란 후 국가에서 일으킨 工役 중에서도 실록복인의 役事가 가장 거창한 것의 하나였으며, 工程 역시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局을 개설한 이래 4년이 다 되도록 각급의 장인과 감독 및 서리 등이 날마다 작업하면서 새벽에 나와 저녁에 돌아가는 등 한 시각도 쉴 틈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런 대역사를 탈 없이 완료하게 되었으니, 노고에 보답하는 賞典을 특별히 베푸는 것이 마땅할 듯싶다고 아뢰어 윤험을 받았고, 해당 당상과 낭청을 모두 書啓하여 논상하게 되었다.<sup>45)</sup>

9월이 되자 비망기로 정원에 전교하여 江華에 實錄閣을 閉開할 때에 실록을 인출한 뒤에 시행한 賞格에 대해 상고하여 아뢰라고 하였다.<sup>46)</sup> 그러나 춘추관에 신인실록을 봉안한 후 즉시 賞典을 하지 않고 3달이 지나 시행한 것은 조선전기의 관례를 따른 것인지 난 후 안정되지 않은 분위기 탓인지, 관련자료를 찾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다. 賞典하기 위해서는 참여한 인원의 명단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명단이 題名記 작성의 자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9년(1606) 5월에 춘추관에 복인본을 봉안한 形止案이 전래되고 있는데, 이후에 의궤와 제명기가 작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복인시에는 의궤에 대한 언급을 찾지 못하였고, 또한 의궤도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다. 다만 제명기는 전래되고 있으므로 동원된 관원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 이 제명기는 아마도 선조 39년(1606) 내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이후 가장 먼저 제작된 실록은 왜란 이전 실록의 복인본이고, 다음은 「宣祖實錄」이다. 그러나 이 두 시기에 편찬된 실록청의 의궤는 산실된 것으로 보이며, 실록편찬에 동원된 관원의 선생안으로 「實錄廳題名記」를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록복인할 때는 인출만 했기 때문에 실록청이 아닌 실록인출청으로 명명하였고,<sup>47)</sup> 이로서 서명에도 차이가 있게 되어 「實錄廳題名記」가 아닌

190-1.

44) 宣祖實錄. 39年 5월 壬申. 권199.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5. 191.

45) 宣祖實錄. 39年 4월 丙寅. 권198.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5. 188下左.

46) 宣祖實錄. 39年 9월 乙酉. 권203.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5. 265.

47) 宣祖實錄. 39年 5월 庚午, 壬申. 권199.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5. 190-1.

宣祖實錄. 39年 4월 丙寅. 권198.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5. 188下左.

『實錄印出廳題名記』로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실록 복인시의 의례는 『實錄印出廳儀軌』일 가능성이 있다. 『實錄廳題名記』는 대개 규장각이나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므로 다른 곳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의외이나 『實錄印出廳題名記』의 원간본은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성암고서박물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인출시의 자세한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實錄印出廳儀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 그 존재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복인본 실록인출의 의례도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출현을 기대한다.

#### 4. 『實錄印出廳題名記』의 意義

실록편찬이 완료된 후 儀軌廳을 설치하고 봉안형지안과 그간의 전말을 기록한 儀軌를 편찬하고 동시에 춘추관사고본을 봉안한 후 순차적으로 외사고에 봉안하게 된다. 외사고에는 내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봉안하므로 즉각적으로 봉안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사이에 題名記를 편찬하게 되는데, 이는 실록청에서 편찬한 것인지, 의례청에서 편찬한 것인지 알 수 없다.

『實錄廳儀軌』에는 實錄을 纂修한 전말과 일정, 동원된 인원, 소요된 물자 등이 모두 기록된다. 실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개 目錄, 時日, 凡例와 각종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時日에는 設廳, 刪節, 纂修, 校正, 校讐, 印刊, 奉安, 洗草의 일정이 기재되어 있고 凡例에는 纂修와 校正으로 나누어 조목조목 수록되어 있다. 이어 각종문서에는 啓辭(座目), 移文秩, 甘結秩, 書啓類, 各房謄錄이 수록되어 있다.

啓辭에는 摠裁官 이하 堂郎의 임명과정과 명단, 實錄廳事目, 實錄廳纂修凡例, 校正凡例, 實錄廳儀軌事目, 論賞이 수록되어 있다. 移文秩에는 실록청 도청에서 각 기관에 실록제작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보낸 공문이 수록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물자의 조달과 실록청에 소속된 인원과 공장의 처우와 관련된 내용이다. 甘結秩에는 상급 관서에서 하급 관서로 보내는 문서가 수록되었는

데, 지시와 명령이 주된 내용이다. 같은 내용의 감결을 여러 관서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한 관서에만 보내는 경우도 있다. 물자조달의 경우 구체적 분량과 공급시기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書啓類에는 찬수 참가자의 명단, 備忘記, 堂郎의 仕日, 來關, 禮關 등이 기록되었다. 各房謄錄에는 1,2,3房, 謄錄廳, 粉板廳, 儀軌廳, 別工作廳의 所掌 사무와 任員, 稟目, 甘結, 會同, 堂郎前後官竝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의궤에 수록된 문서는 원문서 상태가 아닌 시간순으로 정리된 謄錄이다. 따라서 실록청 관원이 실록 편찬에 참여한 기간과 그 연유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목요연하게 보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더구나 선조 연간 실록을 복인할 때의 「實錄印出廳儀軌」는 아직 그 전래가 확인되지 않았다.

「明宗實錄」까지는 실록 말미에 수록된 편수관의 명단에 춘추관 관원의 직책인 領事, 監事, 知事로 수록되었다. 이는 실록청 관원으로서의 역할보다 춘추관 관원으로서의 역할이 중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端宗實錄」과 「燕山君日記」에는 자체에 편수관의 명단이 수록되지 않았으나 이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논외로 한다. 모두 별도의 제명기도 간행한 듯 하지만 확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효종 4년(1654)에 편찬된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의 기록에 중종 연간 열성실록을 중수할 때의 題名帖子에 세조연에 주악을 하사한 사실을 언급한 것<sup>48)</sup>을 통해 역대로 제명록을 편찬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전의 제명기는 확인되지 않았고, 임진왜란 이후의 복인본 실록부터 확인된다. 전주사고의 형지안에도 제명기는 보이지 않는데,<sup>49)</sup> 이는 임진왜란 이전에는 중요한 사책이나 천문학 등 통치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서책만 수장한 까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복인본 「明宗實錄」 말미에는 당해 실록 찬수에 참여한 편수관의 명단에 이어 복인에 참여한 관원의 명단도 첨가되어 있다. 「宣祖實錄」 말미에는 춘추관 관원의 역할로 수록되었고, 「仁祖實錄」과 「孝宗實錄」에는 실록청 관원의 역할로 수록

48)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187. 이는 중종 33년(1538) 11월에 성주사고에 불이 나서 34년 세종과 성종의 실록은 印出하고 나머지 8대의 실록은 兼春秋 가운데 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正書시켜 다시 사고에 봉안하게 한 사실을 지칭하는 듯하다.

49) 萬曆十六年戊子九月初一日全羅道全州史庫曝曬形止案. 寫本. 宣祖 24.

白麟, “全州史庫와 同藏書의 疎開經緯,”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집(1972), 5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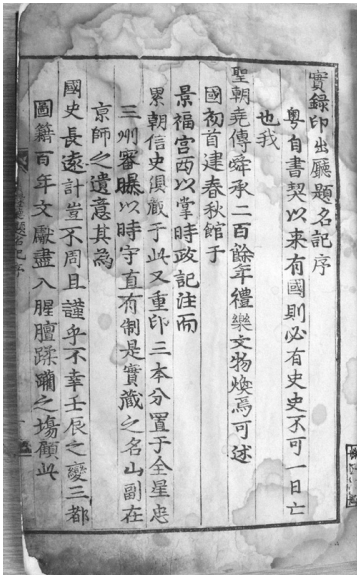
되었고, 『光海君日記』에는 편수관의 명단이 수록되지 않았다. 『宣祖實錄』과 『孝宗實錄』의 제명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宣祖修正實錄』의 제명기는 전래되고 있다. 그러나 『顯宗實錄』부터는 실록 말미에 편수관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제명기만 전래되고 있다.

현재 전래되는 最古의 제명기는 복인시의 『實錄印出廳題名記』이며, 이후에는 『實錄廳題名錄』 또는 『實錄廳題名記』 등으로 간행되었다. 이를 통해 당시에 동원된 관원을 알 수 있다. 대개의 『實錄廳題名記』는 규장각과 장서각에 전래되고 있으나, 선조 연간 실록을 복인할 때의 『實錄印出廳題名記』는 규장각과 장서각에서 찾을 수 없었다. 탐색하던 차에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誠庵古書博物館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전사본을 성균관대학교 尊經閣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서 일반적으로 실록청으로 칭하고 있으나 복인시에는 實錄印出廳으로 칭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1, 2 참조).

太祖로부터 明宗까지의 실록을 복인할 때의 『實錄印出廳題名記』는 訓練都監字本으로 초인본이다. 여기에는 선조 39년(1606) 李廷龜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고려대 華山本은 표지가 개장되었는데, 흑색 천으로 된 표지에 홍색바탕에 무늬있는 비단 제침이 붙어 있고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이 책에는 華山 李聖儀의 題記가 있으며, 뒷 면지에는 華山의 해제가 첨부되어 있다. 고려대 晚松本은 원표지인데, 右下角이 손상되었으나 본문은 양호하다.

실록편찬에 동원된 전체적 인원의 규모는 『實錄廳題名記』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제명기에 따라 수록 내용에 차이가 있다. 임진왜란 직후에는 서문에 이어 편찬관의 완전한 직명과 성명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序에 이어 作業日程, 參與官員의 명단도 자세하게 기록된다. 서문에는 題名記를 작성하는 의의, 참여 관직의 종류와 그 업무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 摠裁는 총괄하는 책임을, 纂修, 校正, 校讎는 記述과 纂次的 임무를, 編修, 記注, 記事 등은 謄錄과 繕寫의 일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謄錄과 粉板 등의 직임은 서문에서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작업 일정은 堂郎差定, 設廳始役, 刪節, 纂修始役, 刊印, 洗草의 순이다. 참여한 관원의 명단은 대개

摠裁, 堂上, 郎廳으로 구분되어 있다. 관원마다 品階, 관직, 성명, 字와 生年, 과거 등제연도와 과거의 종류, 本貫, 實錄廳에서 맡은 직임(堂上 이하의 경우), 仕日數의 순서로 기록된다.



<그림 1> 實錄印出廳題名記 序文



<그림 2> 實錄印出廳題名記 卷頭

그러나 「實錄印出廳題名記」는 다른 「實錄廳題名記」보다 단순하다. 총재관도 두지 않고, 도청과 방도 나누지 않고, 다만 당상과 낭청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인원의 완전한 직명과 성명만 기록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때는 纂修, 校正, 校讎 등의 업무가 생략되고, 이미 완성된 실록의 등록과 교정의 업무만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출한 실록의 분량이 많으므로 동원된 인원은 많은 편이다. 그 복인은 선조 36(1603) 7월에 시작하여 선조 39(1606) 4월에 완성하였다. 동원된 당상은 42명, 낭청은 163여명이다. 그러나 「明宗實錄」 말미에 수록된 명단과 제명기의 명단에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이는 <표 1>과 같다.

<표 1> 編修官 名單의 差異

		複印本 明宗實錄 末尾	實錄印出廳題名記
堂上數		42명	42명
郎廳數		159명	163명
郎廳 記錄 內容上 差異點	李 堦	李滌(20위)	李堦(20위)
	柳希奮	行弘文館應教(41위)	行弘文館典翰(28위)
	柳希奮	金大來와 朴震元 사이	李廷謙과 宋錫慶 사이
	金大來	吳百齡과 柳希奮 사이(40위)	柳澗과 吳百齡 사이(40위)
	吳百齡	柳澗과 金大來 사이(39위)	金大來와 朴震元 사이(41위)
	李順慶	掌樂院僉正(53위)	行世子侍講院弼善(46위)
	李順慶	尹暄과 權訶 사이	李志完과 丁好善 사이
	尹 暄	李信元和 李順慶 사이(52위)	李信元和 權訶 사이(53위)
	朴東望	수록되지 않음	金元祿과 李幼淵 사이(107위)
	黃汝一	수록되지 않음	朴顏賢과 趙穢 사이(150위)
	尹衡彥	수록되지 않음	兪學魯와 朴曾賢 사이(161위)
	朴曾賢	수록되지 않음	尹衡彥과 李涎 사이(162위)

복인본과 제명록에 수록된 인원의 수치와 인원이 다른 것은 기록이 不備한 탓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례에 수록된 인원과도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복인시의 의례가 출현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史官은 자고로 문장과 명망을 겸비한 자를 택해 제수하였고, 兼春秋도 일찌기 待教를 지내야 차출되었다. 선조도 실록 인출에 동원되는 낭관을 용잡한 인물로 구차하게 채운다면 폐단이 말할 수 없으므로 郎官은 반드시 유식한 사람을 가려서 임명하게 했다.<sup>50)</sup> 그러나 낭청 가운데 검춘추에 부적합한 인물로 충원된 자가 있어서, 이들을 인사조치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工曹正郎 李春英, 典籍 丁好寬, 兼春秋 趙穢과 李屹이었다. 이들은 『明宗實錄』 말미와 『實錄印出廳題名錄』에는 낭청 명단에 수록되었으나, 李屹만은 수록되지 않았다. 李屹만 수록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의례가 발견되면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즉 선조 37년(1604) 7월 실록을 監校하는 일은 직임이 매우 중한데도 兼春秋

50) 宣祖實錄. 38年 8월 癸卯. 권190.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5. 97.

가운데 전에 待敎를 지내지 않은 자가 있어 담당부서에서 인사조치시키고 세밀하게 선택하여 차출하게 함으로써 그 선발을 중하게 할 것을 사간원에서 요청하였다. 이때 공조정랑 李春英은 글을 잘 한다는 이름이 있기는 하나 명망이 없다는 평판이 있는데, 知製敎에 선임되었으므로 모두 놀라는 정도여서 인사조치할 것을 청한 것이다.<sup>51)</sup> 이때 知製敎에서만 체직된 것인지 『實錄印出廳題名錄』의 낭청 명단에 通訓大夫行刑曹正郎兼春秋館記注官 李春英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록 말미에는 通訓大夫行工曹正郎兼春秋館記注官 李春英으로 기록되어 있다. 관직명이 다른 것은 제명록 편집시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江都史庫의 守直은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하여서 兼春秋를 差送하더라도 구차한 일인데, 典籍 丁好寬은 史官은 물론 겸춘추도 아닌데도 實錄印出廳의 郎廳이라고 수직할 수 있다하여 吏曹가 차정하여 보내었다. 이 처사는 지극히 타당하지 못하다고 사간원에서 체직을 요청해 허락받았다.<sup>52)</sup> 역시 『實錄印出廳題名錄』에는 낭청 명단에 朝奉大夫行兵曹佐郎兼春秋館記事官 丁好寬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경우는 인출청의 낭청을 체직할 것을 요청했다기보다는 강화사교의 수직을 체직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또 38년(1605) 8월에도 낭청 가운데 兼春秋 趙穉과 李屹은 겸춘추에 부적합한 인물로 충원되어서, 이들을 개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sup>53)</sup> 『實錄印出廳題名錄』에는 낭청 명단에 趙穉은 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兼春秋館記事官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李屹은 수록되지 않았는데, 李屹만 수록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는 그만큼 공역이 많이 드는 작업이어서 많은 인원이 필요했고 충원하는 과정에서 자격에 미달되는 자도 참여하게 되었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실록을 복인할 때 정서, 등록, 교정을 담당할 관원 외에도 관원과 매우 많은 장인이 동원되었다. 繕工監 監役 외에도 唱準, 刻字匠, 均字匠, 紙匠, 印出匠, 粧冊匠, 書記, 使令, 守直軍官 등등 동원된 장인은 매우 많다. 이들 동원된 인원은

51) 宣祖實錄. 37年 7월 己巳. 권176.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4. 627下右.

52) 宣祖實錄. 37年 12월 庚午. 권182.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5. 15.

53) 宣祖實錄. 38年 8월 庚申. 권190. 『朝鮮王朝實錄』(서울: 探求堂, 1968-69). 책25. 113上右.

의뢰가 발견되어야 밝혀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실록청 관원도 일시에 임명하고 완성될 때까지 모두가 활동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임명되었다가 사유가 있어 체직되기도 하고, 중간에 임명되어 중도에 체직되기도 하고, 중간에 임명되어 완성까지 활동하는 등 다양하다. 의뢰를 볼 수 없으므로 실록말미나 제명록으로 는 참여 여부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선조 4년(1571)에 완성된 『明宗實錄』 편찬에 참여했던 관원 가운데 실록 복인에 참여한 관원은 尹承吉 1명 밖에 없다. <표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明宗實錄』 간행시에는 通善郎行兵曹佐郎으로 참여하였는데, 복인시에는 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同知春秋館事로 참여하였다. 즉 선조초에는 기사관이었으므로 낭청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30여년 후에는 당상으로 복인에 참여한 것이다.

<표 2> 明宗實錄 編纂에 참여한 관원으로 複印에 참여한 관원

姓名	明宗實錄 編纂	歷代實錄 複印時
尹承吉	通善郎行兵曹佐郎	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同知春秋館事

조선시대에 선조 8년(1575)부터 서서히 봉당의 조짐이 나타나 선조 11년(1578) 경 김효원이 낭관과 언관을 장악하면서 서인과 동인으로 분리되어 구체적으로 봉당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明宗實錄』은 선조 1년(1568) 8월부터 선조 4년(1571)에 洪暹이 摠裁官으로 편찬하였으므로 당쟁과 연관지를 필요는 없다. 다만 30여년 후 복인세력이 복인하는 실록에 尹承吉이 참여한 것이다.

동인이 남인과 복인으로 분기 조짐이 있는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맞았다. 전란 중에는 柳成龍을 중심으로 한 남인 중심의 연립적인 정국을 운영했지만 전란이 끝나면서 남인이 퇴진하고 복인이 집권하게 된다. 복인 집권기에 실록의 복인이 이루어져 복인이 복인을 주도하게 된다. 그래도 복인에 당상으로 참여한 남인은 柳根, 尹承勳, 李光庭, 李德馨, 李好閔, 韓浚謙, 許箴 등이 보이고, 복인은 奇自獻, 閔夢龍, 朴承宗, 宋應洵, 柳永慶, 李準, 崔天健, 許項 등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고루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복인도 완료되고 전란 후의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현실정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李山海, 鄭仁弘, 洪汝淳 주도의 복인은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분기하고, 대북이 골북과 육북의 대립을 보이는 등 혼란이 가중되어 결국 金蓋國, 南以恭, 柳永慶, 柳希奮이 주도하던 소북정권의 성립으로 귀결되었다. 소북정권은 처음에는 대북을 제외한 서인, 남인세력을 포용했지만, 왕권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지지세력을 확보하게 되자 다른 세력과 마찬가지로 독점적인 권력생사를 꾀했고,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대북인 鄭仁弘, 李爾瞻과 갈등을 겪음으로서 광해군의 즉위와 함께 소북은 세력을 잃게 되었다.<sup>54)</sup>

『宣祖實錄』은 광해군 원년(1609) 7월 서인 李恒福이 총재관이 되어 편찬하기 시작하였으나, 뒤에는 대북의 奇自獻이 광해군 8년(1616) 11월에 완성하였다. 이때는 복인 후 5-10년 사이이므로 복인에 참여한 관원이 상당수 생존한 상태에서 37명이나 참여하였는데, 실록에는 춘추관 관원의 직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복인할 때는 당상이었으나 『宣祖實錄』을 편찬할 때 영사, 지사, 동지사로 참여한 관원도 있고, 복인할 때 연소문신은 낭청이었으나, 동지사, 편수관, 기주관, 기사관으로 참여한 관원도 보인다. 『宣祖實錄』 편찬에 참여한 관원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複印에 참여한 관원으로 宣祖實錄 編纂에 참여한 관원

姓名	歷代實錄 複印時	宣祖實錄 編纂	
奇自獻	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	領事	幼忠奮義炳幾翼社奮忠秉義決幾亨難功臣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觀象監事世子師德平府院君
趙挺	嘉義大夫戶曹參判兼同知春秋館事	知事	崇政大夫行刑曹判書
閔夢龍	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知春秋館事	知事	崇政大夫行議政府左參贊
尹昉	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春秋館事海昌君	知事	正憲大夫海昌君
尹承吉	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同知春秋館事	知事	資憲大夫知中樞府事
朴承宗	資憲大夫行司憲府大司憲兼同知春秋館事	知事	資憲大夫知中樞府事

54) 具德會, “宣祖代 後半 政治體制的 再編과 政局의 動向,” 『韓國史論』 20(1988).

姓名	歷代實錄 複印時	宣祖實錄 編纂	
吳億齡	嘉善大夫吏曹參判兼弘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世子右副賓客	知事	資憲大夫刑曹判書兼弘文館提學
朴樾	通訓大夫行兵曹正郎兼春秋館記注官	同知事	輪誠結義奮忠定運奮忠秉義亨難功臣正憲大夫靈原君
鄭光績	嘉義大夫禮曹參判兼同知春秋館事	同知事	嘉義大夫行義興衛護軍
申湜	嘉義大夫禮曹參判兼同知春秋館事	同知事	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府副摠管
朴震元	通訓大夫行弘文館副應教知製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	同知事	嘉善大夫漢城府右尹兼同知義禁府事
姜弘立	通訓大夫行成均館司藝知製教兼春秋館編修官漢學教授	同知事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姜籤	通訓大夫弘文館直提學知製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	同知事	嘉善大夫行忠佐衛護軍
尹孝先	朝散大夫行吏曹佐郎兼春秋館記事官	編修官	通訓大夫弘文館直提學知製教兼經筵侍講官
丁好善	通訓大夫行成均館司藝知製教兼春秋館編修官校書館校理	編修官	通訓大夫承文院判校知製教
鄭榮國	昭威將軍行龍驤衛副司直兼春秋館記注官	編修官	通訓大夫通禮院左通禮
尹守謙	朝散大夫行兵曹正郎兼春秋館記注官	編修官	通訓大夫軍資監正
閔德男	奉正大夫行弘文館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	編修官	通訓大夫行弘文館典翰知製教兼經筵侍講官
崔東式	振威將軍行龍驤衛副司直兼春秋館記注官	編修官	通訓大夫行世子侍講院輔德
鄭岏	朝散大夫行吏曹正郎知製教兼春秋館記注官世子侍講院司書	編修官	通訓大夫行議政府舍人知製教兼惠民署醫學教授
蘇光震	奉列大夫行兵曹正郎知製教兼春秋館記注官	編修官	通訓大夫行世子侍講院弼善知製教
朴顏賢	宣教郎弘文館副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	編修官	通訓大夫行世子侍講院弼善知製教
俞昔曾	奉正大夫行兵曹正郎兼春秋館記注官	編修官	通訓大夫行成均館司藝
成晉善	通訓大夫行成均館直講知製教兼春秋館記注官	編修官	通訓大夫行弘文館副應教知製教兼經筵侍講官
任章	奉直郎行世子侍講院說書兼春秋館記事官	編修官	通訓大夫行掌樂院僉正知製教
趙澂	通訓大夫行弘文館副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	編修官	禦侮將軍行龍驤衛副護軍知製教
尹讓	奉列大夫行世子侍講院文學兼春秋館記注官	記注官	通訓大夫行弘文館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官
尹綱	定略將軍行虎賁衛副司直兼春秋館記注官	記注官	通訓大夫行禮曹正郎

宣祖 年間の 「實錄印出廳題名記」에 관한 研究

姓名	歷代實錄 複印時	宣祖實錄 編纂	
黃敬中	奉訓郎行弘文館副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世子侍講院司書	記注官	通訓大夫行禮曹正郎
吳翊	宣武郎行藝文館奉教兼春秋館記事官	記注官	通訓大夫行兵曹正郎知製教
琴慥	承訓郎成均館典籍兼春秋館記事官	記注官	通訓大夫行兵曹正郎
朴曾賢	通仕郎行藝文館檢閱兼春秋館記事官	記注官	通訓大夫行成均館直講知製教
朴東望	禦侮將軍行忠武衛司直兼春秋館記注官	記注官	通訓大夫行成均館直講
徐景雨	宣教郎守成均館典籍兼春秋館記事官	記注官	禦侮將軍行龍驤衛司直
丁好寬	朝奉大夫行兵曹佐郎兼春秋館記事官	記注官	保功將軍行忠武衛副司直
成時憲	承議郎兵曹佐郎兼春秋館記事官	記事官	禦侮將軍行龍驤衛司果
洪命元	通善郎行禮曹佐郎知製教兼春秋館記事官	記事官	通訓大夫行弘文館副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

\* 성명 아래에 밑줄이 없는 경우는 당상으로 참여한 관원이고, 밑줄이 있는 경우는 복인시에 낭청으로 참여한 관원이다.

복인할 때는 당상이었으나 인조 12년(1634)에 완성된 『光海君日記』 편찬에는 중재관으로 참여한 관원이 1명이고, 1명은 당상에서 都廳堂上 즉 지사로 참여하였고, 1명은 낭청에서 당상으로 참여하였다. 복인에 참여한 관원과 『光海君日記』 편찬에 참여한 관원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표 4> 複印에 참여한 관원으로 光海君日記 編纂에 참여한 관원

姓名	歷代實錄 複印時	光海君日記 編纂	
尹昉	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春秋館事海昌君	摠裁官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海昌君
李廷龜	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同知春秋館事	前都廳堂上	輔國崇祿大夫行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世子貳師禮曹判書知經筵春秋館事
洪瑞鳳	通訓大夫行成均館司藝知製教兼春秋館編修官	都廳堂上	奮忠贊謨靖社竭忠效誠炳幾寧社功臣崇政大夫行兵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事世子右賓客弘文館提學益寧君

복인시에 참여한 관원으로 『仁祖實錄』과 『宣祖修正實錄』 편찬에 참여한 관원은 전무하다. 『宣祖修正實錄』은 인조반정 후 편찬이 시작되어 효종 8년(1657)에 완성되었고, 『仁祖實錄』은 효종 1년(1650)에 착수하여 효종 4년(1653)에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복인에 참여한 관원이 50여년 후 이때까지 생존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다. 이상의 <표 2>에서부터 <표 4>까지를 종합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明宗實錄』 편찬에 참여한 관원으로 30여년 후 복인에 참여한 관원은 1명 밖에 없다. 이는 많은 시간이 경과한 것, 임진왜란을 겪은 것도 이유가 되겠고, 또 선조 중기를 지나면서 봉당의 정도가 심화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인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편찬된 『宣祖實錄』 편찬에 참여한 관원은 37명이나 된다. 복인 시의 당상은 영사, 지사, 동지사로 참여하였고, 낭청은 동지사, 편수관, 기주관, 기사관으로 참여하였다. 成時憲과 洪命元은 낭청이었으나 여전히 같은 직급으로 참여하였다.

<표 5> 複印에 參與한 官員과 前後 實錄

實錄名	人員數	官職의 變化
明宗實錄	1	記事官 → 堂 上
宣祖實錄	1	堂 上 → 領 事
	6	堂 上 → 知 事
	2	堂 上 → 同知事
	4	郎 廳 → 同知事
	13	郎 廳 → 編修官
	9	郎 廳 → 記注官
	2	郎 廳 → 記事官
光海君日記	1	堂 上 → 總裁官
	1	堂 上 → 前都廳
	1	郎 廳 → 堂 上

실록편찬의 방향은 領事와 知事に 의해 좌지우지된다. 『宣祖實錄』을 편찬한 관원 가운데 복인은 영사 奇自獻과 지사 閔夢龍만 확인된다. 다른 관원의 분명한 특성을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宣祖實錄』은 복인의 의도대로 편찬된 것이

다. 30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편찬된 『光海君日記』 편찬에는 3명만 참여하게 되는데, 총재관과 당상으로 참여하였다. 45년 후에 편찬된 『仁祖實錄』과 51년 후에 편찬된 『宣祖修正實錄』에는 복인에 참여한 관원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시일이 너무 많이 경과한 탓으로 볼 수 있다.

## 5. 結 言

이상으로 조선시대의 인명록과 인명록으로서의 『實錄廳題名記』에 대해 살펴 보았다.

조선시대에 작성된 인명록에는 관료를 대상으로 한 공신녹권, 방목, 선생안이 있고, 유림을 대상으로 한 靑衿錄, 尋院錄, 한 가문을 대상으로 한 족보, 호적, 장적이 있고, 거주민, 낙강생, 장인, 죄인, 노인, 표류민, 구휼민 등 백성 가운데 특정 사안을 위해 보고용으로 작성한 성책 등이 전래되고 있다. 이들 자료는 당시의 관료사회, 향촌사회, 사회, 경제, 문화 등을 연구하는데 일차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임진왜란으로 이전의 실록이 모두 불타고 오로지 전주사고의 실록만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 실록은 선비 孫弘祿, 安義, 義僧 熙默의 조력으로 內藏山, 海州, 江華로 이봉되었다. 몽진 중 또는 몽진을 떠난 선조가 1년 6개월만에 환도한 후 남은 실록 1부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어 복본제작에 대해 5차례나 논의를 하였고, 드디어 등서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정유재란이 발생하여 실록등서는 중단되었다.

전쟁으로 강화의 실록을 다시 영변으로 이봉하였다가 전쟁이 종식된 후 강화로 다시 환장하였다. 이 사이에도 4차례 복본제작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전후 9차례 논의를 거쳐 복본을 제작하게 되는데, 시종 등서할 것을 논의하다가 실행단계에 이르러 등서를 완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活印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복본 제작 부수도 처음에는 1부, 2부를 제작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3부를 인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결국 부산물인 교정쇄도 장치하여 원본과 합쳐 5부

의 복본이 분장되었다. 이후 5부의 실록을 제작하게 된다.

실록의 편찬이 완료되면 奉安形止案을 작성하고 이어 사고에 순차적으로 봉안하게 된다. 봉안에 앞서 儀軌廳을 설치하여 儀軌와 形止案을 작성하였다. 洗草와 동시에 시상대상이 될 관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洗草宴과 政府宴에 초대하였다. 이 명단이 題名記의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題名記는 편찬 주체가 實錄廳인지, 儀軌廳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明宗實錄』까지는 대개 실록 말미에 춘추관 관원의 직책으로 편수관 명단이 수록되어 있고, 제명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복인시의 관원명단은 복인본 『明宗實錄』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데, 당상과 낭청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제명기도 편찬되었는데, 이는 조선 전기의 제명기 편찬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제명기 편찬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으나 『宣祖實錄』과 『孝宗實錄』의 제명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래되고 있는 最古의 제명기는 복인시의 『實錄印出廳題名記』이다.

『實錄印出廳題名記』는 동원된 관원을 당상과 낭청으로만 구분하여 완전한 직명과 성명만 기록한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이는 찬수, 교정, 교수의 업무가 생략되고, 등록과 교정의 업무만 수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록의 분량이 많아 당상 42명과 낭청 163명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明宗實錄』 말미에 수록된 명단과 제명기에 수록된 명단에는 낭청의 인원수나 수록순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 이유는 알기 어렵다. 부적합한 인물로 총원된 경우 그 당시에 인사조치된 경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宣祖實錄』 이후에도 실록에 수록된 명단과 약간 상이한 제명기도 있고, 2종의 제명기가 제작된 경우도 있는데, 내용도 점차 자세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고로 미룬다.

<참고문헌>

- 具德會. “宣祖代 後半 政治體制의 再編과 政局의 動向.” 『韓國史論』 20(1988).
- 具玩會. “先生案을 통해본 朝鮮後期의 守令.” 『慶北史學』 제4집(1982).
- 金峻憲. “慶州市域의 首戶長系譜.” 『嶺大論文集(社會科學篇)』 7(1974).
- 萬曆三十一年癸卯十月十八日京畿道江華府史庫曝曬形止案. 寫本. [宣祖 36(1603)].
- 萬曆十六年戊子九月初一日全羅道全州史庫曝曬形止案. 寫本. [宣祖 24(1591)].
- 萬曆二十二年甲午八月十六日黃海道海州史庫曝曬形止案. 寫本. [宣祖 27(1594)].
- 裴賢淑. 『朝鮮實錄研究序說』. 대구: 태일사, 2002.
- 白麟. “全州史庫와 同藏書의 疎開經緯.”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집(1972).
- 奉成奇. “奮武原從功臣錄券과 揚武原從功臣錄券에 대한 고찰.” 『도서관』 57권2호 (2002. 여름).
- 『史庫址調查報告書』.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201-209. 壬辰記事.
- 實錄印出廳題名記. 複印本.
- 實錄廳題名記. 仁祖, 顯宗, 英祖, 正祖, 純祖, 憲宗, 哲宗.
- 纂修廳題名錄. 光海君.
- 尹京鎮. “고려후기 先生案 자료를 통해본 外官制의 변화.” 『國史館論叢』 101 (2003. 12).
- 尹仁鉉. “凡例와 跋文을 통한 璿源系譜記略의 板本 選別考.” 『書誌學研究』 23집 (2002.6).
- 李廷龜. 『月沙集』 影印本. 서울: 景文社, 1982. 권39. 實錄印出廳題名錄序.
-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影印本.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 張大遠. “宣祖의 李朝實錄複印.” 『도서관』 214(1976. 10).
- 傳燈本末寺誌. 影印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8.
-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68-69.

